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DB생명보험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객정보

성명	계약자와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기재사항

① 금융상품명	(필수) ※ 증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함께 기재
② 상품 내용	계약체결일 / 월보험료 등 (상품명을 모를 경우 기재)
③ 법 위반 사실	(필수)
④ 준수의무 위반 (해당사항 V 체크)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법제17조 3항)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법제17조 3항)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3항)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법 제20조 1항)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법 제21조)

3.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내용	(필수) ※ 필요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별도 첨부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며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의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금융상품 계약자	성 명:	(서명/인)
(법인의 경우)대리인	성 명:	(서명/인)
친권자 / 후견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